



역사 서술 원칙으로서의 ‘직필(直筆)’의 의미 연구: 『실록』의 풍성한 독해를 위한 제언*

송지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본고는 『실록』 서술 및 편찬의 규범적 원칙으로서의 ‘직필(直筆)’ 혹은 ‘직서(直書)’를 당대인들의 시선대로 이해하기를 시도한다. 조선 시대에는 ‘직필’에 대한 상이한 두 가지 이해가 통용되었다. 하나는 고대 중국에서 통용되던 의미와 같은 것으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사관의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평가를 숨김없이 기록하는 것이 ‘직필’이라는 이해였다. 다른 하나는 주희가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혹은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것이 ‘직필’이라는 이해였다. 두 가지 이해는 조선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상호 경합하며 다양한 정치행위자들의 이해에 봉사하기도 했고, 조선 중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상호 결합하여 ‘직필’의 새로운 정치적 기능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본고는 ‘직필’의 의미에 대해 역사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실록』에 보다 복잡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주제어 직필(直筆), 직서(直書), 실록(實錄), 동아시아사론(史論), 역사서술

I. 서론

‘직필(直筆)’의 이상 혹은 ‘직서(直書)’의 정신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하 『실록』)¹의 서술 및 편찬의 주요한 원칙으로 이해되어 왔다. 당대의 사관(史官)

* 본 연구는 경남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에서 주관한 <디스퓨타치오> 워크숍에서 발표되었다. 유익한 발표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송지혜, 2019)을 발전시킨 것이다.

** ylliberte@gmail.com

¹ 『조선왕조실록』은 조선(朝鮮, 1392~1897)의 조정에서 역대 왕들의 재위기간을 단위로 편찬해 온 관찬 연대기이다. 조선에서는 즉위한 왕이 담당 관청인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고 편찬관들을 임명하여 선대 왕의 재위기간에 대한 실록을 편찬토록 했다. 『실록』에는 연월일 순으로 주요한 정무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회 때의 대화, 공적·사적 시비 내용, 대간의 논계, 상소문, 사관(史官)의 사론(史論)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오항녕, 2018a: 289-290). 이렇게 편찬된 『실록』들은 관찬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정치집단에 의해 사찬된 ‘당론서(黨論書)’류의 기록들과 구분되고, 당대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편찬한다는 점에서 전조(前朝)의 기록을 재편찬하는 『삼국사

들이 실제로 ‘직필’의 정신에 투철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그러나 『실록』이 “전통적인 직필의 이상과 기대를 받”(오항녕, 2018a: 199)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 내의 대체적인 합의가 있다. 실제로 “사관의 직임은 직필”이라거나 “사관은 마땅히 직필해야 한다”는 등의 언명을 『실록』에서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² 이를 통해 우리는 당대인들도 ‘직필’을 사관들이 도달해야 마땅한 규범적 이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직필’이란 무엇인가. 그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실록』을 해석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에 실로 중요하다. 일례로 차용걸(1979)은 일찍이 ‘직필’의 원칙에 주목하여 “직필의식(直筆意識)”이란 “사관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시대를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단적으로 평하지 못하고”(차용걸, 1979: 152) “후대에 사실 대로를 그대로 전하여 후인들의 판단에 남기겠다는 정신”(차용걸, 1979: 189)이라고 이해했다. 또한 조선 전기의 『실록』들은 이러한 ‘직필’의 이상에 상대적으로 충실했기에 “사실의 완전한 전달과 보존”(차용걸, 1979: 188)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요컨대, 그는 ‘직필’의 원칙이 사관의 주관관을 배제하고 목전의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한 결과, 그것을 준수했다고 보이는 기록들을 당대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으로 간주하는 데에 이르렀다.

여러 연구자들은 ‘직필’의 의미에 대한 차용걸의 이해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채택해 왔다. 심지어는 『실록』을 당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하는 연구자조차도 그 이유로 사관들이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으로서의 ‘직필’에 실패했다는 점을 꼽았다. 예컨대, 김경수(2002)는 왕대별 개별 『실록』들을 “편찬 시기의 시대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로 독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실록』에 수록된 당대사는 조선의 현대사”였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간섭하여 사관들의 “곡필(曲筆)의 개연성”을 높였기 때문이다(김경수, 2002: 39-40). 이때 그가 이야기하는 “곡필”이란 ‘직필’의 반대말로, 사관들이 “견문한 바를 사초로 작성하려는 철저한 기록 정신”(김경수, 2002: 6)에 투철하지

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등의 역사서와 구분된다.

² 夫史官職任直筆.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6일]; 史臣當以直筆也.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8일]

못한 결과이자 “객관적으로 역사 사실을 기록”(김경수, 2002: 39)하는 데에 실패한 결과다.

‘직필’의 의미에 대한 상기한 이해는 그것의 현대적 어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필’은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대로 적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오항녕(2016)은 ‘직필’을 “글자 그대로 숨김없이 사실대로 쓰는 것”(오항녕, 2016: 125)으로 이해했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실록』을 서술·편찬하던 사관들의 ‘직필’에 대한 이해가 현대인들의 그것과 같으리라는 추론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는 별다른 입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것에 입각한 연구자가 『실록』의 기록들을 ‘사실대로 쓰는 것’에 성공 혹은 실패한 결과로서만 독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러한 독해는 종종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실록』의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노명호(2019)는 “세종(世宗)이 추진한 ‘직서’의 원칙”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무제한적 직서”의 원칙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식화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세종이 요구했던 ‘직서’는 명(明)과의 민감한 관계를 의식하여 고려(高麗)의 황제제도와 관련된 특정 표현들을 기휘(忌諱)하거나 개서(改書)하는 “제한적 직서”였다. 그런데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고려사』와 『절요』가 세종이 주창했던 ‘직서’의 원칙에 충실했음만 고려했을 뿐 해당 원칙이 당대에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당 사료에 수록된 고려의 황제제도에 대한 기록들이 고려 황제제도의 실제 위상과 실태를 반영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고려 황제제도의 실상을 정확하게 탐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노명호, 2019: 160).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노명호는 당대인들의 역사 쓰기 원칙을 당대인들의 시선대로 이해하는 데에 실패하는 것은 “개념체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다고 지적한다. “연구대상 당시의 핵심적 개념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연구자 “그(자신)에게 형성되어 있는 개념체계”에 의지해서만 역사를 탐구하면, “개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사료에 주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주목하더라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노명호, 2019: 193-206).

노명호의 지적은 본고의 문제의식과 상통한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직필’을

‘사실대로 쓰는 것’이라는 현대적 어의로 이해하여 『실록』의 기록들을 이에 성공 혹은 실패한 것으로 읽어 내고자 했기에 일정한 한계를 지녔다.³ 연구자가 『실록』의 상당 부분을 “개념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대인들이 『실록』의 서술 및 편찬에서 ‘직필’의 원칙으로서 목표했던 바를 정확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알아야 사관들이 ‘직필’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흔적들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당대인들이 ‘직필’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당대인들의 시선에 따라 재구성하고 『실록』은 그들이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결과로 독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본고는 ‘직필’의 의미가 『실록』이 집필되고 편찬되어 온 약 500여 년의 시간 동안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태종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의 기록들 내에서 ‘직필’의 용례들을 검토한 결과,⁴ 시대에 따라 당대인들이 이해하는 ‘직필’의 의미가 변화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변화는 ‘직필’의 의미에 대한 조선의 정치행위자들 간의 직간접적인 논쟁을 통해 전개되었다. 본고는 ‘직필’의 의미를 둘러싼 당대인들의 논쟁을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의 ‘직필’의 의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직필’의 의미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취하기를 시도한다. 그러한 시도 속에서, 노명호(2019)가 주목했던 세종의 “제한적 직서”는 조선의 전 기간을 관통했던 원칙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직필’의 의미를 둘러싼 흥미로운 논쟁을 구성하는 하나의 입장이었음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실록』 서술 및 편찬의 규범적 원칙으로서의 ‘직필’을 당대인들의 시선대로 이해하기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직필’에 대한 중국 내 담론을 간략하게 재구성한다. 조선인들 또한 중국 내의 담론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작업은 ‘직필’의 의미를 둘러싼 조선 내 담론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이어 III장에서는 조선에서 통

³ 이러한 한계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검토는 송지혜(2019: 1-10) 참고.

⁴ 일제 강점기 시절에 편찬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학계 내에서 통상적으로 『조선왕조실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항녕(2018a: 121-134) 참고.

용되던 '직필'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제시하고, 그것들이 상호 경합하고 결합하는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직필'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을 재구성함으로써 당대의 어떤 정치행위자들이 어떤 목적에서 '직필'에 대한 각각의 이해를 주장했는지 살핀다. 또한 경합하던 '직필'의 두 가지 의미가 점차 결합해 나가는 양상을 고찰하고, 두 의미의 결합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살핀다. '직필'의 의미에 대한 이와 같은 역사적 접근이 '직필'에 성공 혹은 실패한 기록으로서의 『실록』을 풍성하고 섬세하게 독해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II. 중국 지성사에 드러난 '직필'의 역사

'직필'은 조선에서 처음 발명된 개념이 아니다. '직필'은 적어도전한(漢, 206 BC~9 AD) 시기부터 역사 서술의 규범적 원칙으로 회자되었다.⁵ 역사 서술에 대한 중국 내 담론에서 '직필'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자는 동호(董狐)다. 그는 진(晉, 1042~376 BC)의 공식 역사가였는데, 공자는 그를 좋은 역사가라고 칭송했다.⁶

을축(乙丑)년, 조찬(趙穿)이 영공(靈公)을 도원(桃園)에서 시해했다. 조돈(趙盾)은 진나라의 국경을 넘지 않고 돌아왔다. 동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조돈이 그의 군주를 시해했다.” 그리고는 그것을 조정에 보였다. 조돈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 동호가 대답했다. “그대는 정경(正卿)으로서 도망쳤으나 국경을 넘지 않았고, 되돌아왔으나 국왕을 공격한 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대가 군주를 시해한 것이 아니면 누가 했단 말인가?” 조돈이 말했다. “아, 『시경』에 ‘나의 고민이 스스로 이 근심을 남겼구나’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나를 이르는 말이구나.” 공자가 말했다. “동호는 고대의 훌륭한 사관(良史)이다. 서술의 법도는 (조돈의 죄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 조돈은 고대의 훌륭한 대부(大夫)이다. 법도를 위하여 죄를 받아들였다. 애석하구나, 국경

⁵ 동중서(董仲舒)는 공자의 역사서 『춘추(春秋)』를 논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직서(直書)”를 언급하고 있다.

⁶ 동호의 사례와 그에 대한 공자의 논평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宣公二年」에서 처음 발견된다.

을 넘었다면 (죄를) 면하였을 것을.”⁷

공자에 따르면, 동호는 조돈의 도덕적 잘못을 숨기지 않았기에 “훌륭한 사관”이다. 조돈은 조찬이 영공을 시해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자신의 군주를 섬겨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을 위반했다. 동호는 조돈의 위반 행위가 실제 군주의 시해 행위에 맞먹는 죄라고 판단했고, 이에 “조돈이 자신의 군주를 시해했다”고 적었다. 공자의 승인으로 인해, 후대의 사관들은 이러한 동호의 필법을 역사 서술의 이상적인 방식이자 ‘직필’의 전형으로 인식하였다.

동호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고대 중국인들이 상상하던 ‘직필’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직필’한다는 것은 어떤 이의 도덕적 잘못을, 그것이 자신보다 상위 권력자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후에, 이 아이디어는 권력자의 죄를 ‘직필’하기 위해서라면 사관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한다. 일례로, ‘직필’의 또 다른 전형인 제(齊, ?~221 BC)나라의 역사가 남사(南史)는 권력자의 군주 시해 행위를 ‘직필’하기 위해 자신과 형제의 목숨을 바친 바 있다. 둘째, ‘직필’은 서술의 대상이 되는 사건 혹은 인물에 대한 사관의 도덕적 판단을 요구한다. 사관이 누군가의 도덕적 잘못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인물의 행동이 도덕적 잘못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직필’은 단지 사관의 정직함과 용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건 혹은 인물에 대해 올바른 도덕적 판단 혹은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요구되는 사관의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가 당대의 상식이나 국가의 법률과 상치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처럼 두 가지 아이디어로 구성된 ‘직필’은 고대 중국인들에게 역사 서술의 규범적 원칙으로 여겨졌지만, 그들은 해당 원칙을 상기할 때마다 한 가지 딜레마를 마주해야만 했다. 문제는 동호를 칭찬함으로써 ‘직필’의 이상을 구체화했

⁷ 乙丑, 趙穿攻靈公於桃園, 宣子未出山而復. 大史書曰, 趙盾弑其君. 以示於朝. 宣子曰, 不然. 對曰, 子爲正卿, 亡不越竟, 反不討賊, 非子而誰. 宣子曰, 嗚呼, 我之懷矣, 自貽伊慼, 其我之謂矣. 孔子曰, 董狐, 古之良史也. 書法不隱. 趙宣子, 古之良大夫也. 爲法受惡. 惜也, 越竟乃免. (향후 사료에 대한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약간의 의역을 포함한다.)

던 공자가 역사서 『춘추』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직필'이 요구하는 한 가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었다. 동중서(董仲舒, 179~104 BC)가 『춘추』에 대해 논평한 저술, 『춘추번로(春秋繁露)』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 논하고 있다.

[혹자가 물었다.] 『춘추』에 이르길, “송독(宋督)이 그의 군주 여이(與夷)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는 장공(莊公) 풍(馮)이 그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왜 이 사실은 경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까?⁸

선공(宣公)에게는 여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동생인 무공(繆公)에게 선양하였다. 또한 무공에게는 풍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왕위를 형의 아들인 여이에게 선양하였다. 『사기(史記)』에 따르면, 송독은 그의 군주였던 여이를 살해하고 무공의 아들인 풍을 새로운 군주로 옹립하였다. 만약 공자가 자신이 칭송했던 동호의 '직필' 방식을 따랐다면, 그는 “풍이 그의 군주를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했어야 했다. 비록 여이를 살해한 자는 송독이었지만, 장공이 송독의 행위를 비난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왕위에 오름으로써 사실상 송독의 시해 행위에 공모한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록은 역사가가 당대의 새로운 권력자였던 풍의 악덕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역사가가 당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직필'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풍이 여이를 시해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풍의 즉위가 송독이 여이를 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 자체를 생략해 버렸다.

공자가 그가 천명했던 역사 서술의 규범적 원칙을 위배했다는 사실은 역사 서술에 관한 담론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에게 하나의 딜레마를 제공했다. 만약 공자의 『춘추』 서술 방식이 '직필'이 아니었다면, 성인(聖人)으로서 공자의 권위는 훼손된다. 반대로, 공자의 춘추필법 또한 '직필'이었다면, '직필'의 의미는 상기한 자신의 외연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딜레마는 역사 서술의 바람직한 방식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논의 속에서 꾸준히 다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

⁸ 經曰，宋督弑其君與夷。傳言，莊公馮殺之。不可及於經，何也？

의 다양한 반응을 시대별로 살펴보는 작업은 추후를 기약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직필’에 대한 조선인들의 사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대응만을 검토하겠다. 상기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식은 동중서의 서술에서 보인다.

그러므로 왕위를 선양(禪讓)하는 것은 『춘추』가 가치롭게 여긴 바였다. 선공은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그의 남동생에게 물려주었다. 그의 남동생 또한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의 형의 아들에게 되돌려주었다. 비록 [이러한 선양 행위들은] [국가의] 법률에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 고귀한 자에게 왕위를 선양한다는 미덕이 있었기에, 버려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이들을 위해 올바른에 처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기휘하고, 그 후에 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죄를 송독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들의] 가치로운 뜻을 보존했던 것이다. 만약 『춘추』가 장공이 선양된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을 직필했다면, 선공과 무공의 고귀함은 파괴되었을 것이며 선(善)이 드러날 곳이 없었을 것이다.⁹

동중서는 공자가 ‘직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공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를 택했다. 그에 따르면, 공자의 역사 서술 방식은 비록 ‘직필’이 아니었다라도 성인(聖人)의 숭고한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공자는 왕위 선양의 미덕이 가치 있다고 여겼기에 선공과 무공의 왕위 선양 행위를 찬양하고자 했다. 그는 만약 풍이 결국은 여이의 왕위를 찬탈하는 데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직필’한다면, 그것이 선공과 무공이 애써 만들어 낸 아름다운 선양의 전통을 가려 버릴까 우려했다. 이에 공자는 의도적으로 풍의 존재와 행위를 『춘추』에서 지워 버림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이 찬탈의 악행보다는 선양의 미덕에 집중토록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를 제출함으로써, 동중서는 ‘직필’의 개념을 구성하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보존하는 동시에, 공자의 서술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 교화를 위한 신중한 선택’이라는 역사 서술의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역사를 서술

⁹ 是故讓者春秋之所善. 宣公不與其子而與其弟, 其弟亦不與子而反之兄子, 雖不中法, 皆有讓高, 不可棄也. 故君子爲之諱不居正之謂, 避其後也亂, 移之宋督以存善誌. 若直書其篡, 則宣繆之高滅, 而善之無所見矣.

하는 자가 당대인들과 후대인들을 올바르게 교화시키기 위해 어떤 것을 보이고 어떤 것을 숨길지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때때로, 공자의 사례에서처럼, '직필'의 원칙을 희생시키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양(梁, 502-557 AD)나라의 문인이었던 유협(劉勰, 465-521 AD)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자가 좋은 역사가로 분류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했다.

존현(尊賢)에 있어서 [무언가를] 숨기거나 기휘하는 것은 본디 공자의 숭고한 의도(尼父之聖旨)이다. 아마도 작은 티끌은 옥의 광택에 흠집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간악함과 사특함에 있어서 견책하는 것은 실로 좋은 역사가의 직필(良史之直筆)이다. 그것은 마치 만약 농부가 잡초를 발견하면, 그것을 언제나 뽑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세대가 항상 의지해야 하는 준칙이다. (...) 만약 [역사가가] 자신의 사적인 마음을 따름으로써 올바른 준칙을 잃어버린다면, 역사라는 장르 자체가 위험에 처하고 말 것이다!¹⁰

위의 인용문에서 유협은 “공자의 숭고한 의도(尼父之聖旨)”를 “좋은 역사가의 직필(良史之直筆)”과 대조시킴으로써 공자가 좋은 역사가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공자는 존현의 잘못과 미덕의 상대적 중요도를 견줄 수 있기에 일반적인 “좋은 역사가”와 다른 존재다. 예를 들어, 공자는 존현의 어떤 악행이 그의 선행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미덕을 칭송하기 위해 그 악행에 대한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반면, 좋은 역사가는 오직 각각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의 여부만 판단할 수 있으며, 어떤 행위가 악행임을 판단하면 언제나 그것을 ‘직필’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유협의 논의는 무엇이 도덕적으로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역사가”는 상대적으로 좁은 시야를, 공자와 같은 성인은 상대적으로 넓은 시야를 견지함을 전제한다. 넓은 시야를 가진 성인이 ‘직필’을 위반하고 자신의 “숭고한 의도”를 따르는 것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지만, 좁은 시야를 가진 일개의 역사가가 “자신의 사적인 마음”을 따라 ‘직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올바른 준칙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¹⁰ 『文心雕龍』「史傳」: 若乃尊賢隱諱, 固尼父之聖旨, 蓋纖瑕不能玷瑾瑜也; 姦慝懲戒, 實良史之直筆, 農夫見莠, 其必鋤也. 若斯之科, 亦萬代一準焉. (...) 若任情失正, 文其殆哉!

아니라 역사라는 장르 자체를 위협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반면, 송나라의 주희(朱熹, 1130~1200 AD)는 상기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택했다. 그는 공자가 『춘추』를 편찬하면서 ‘직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 ‘직필’의 의미를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공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세간의 이해와 다른 해석을 내어 놓았다.

『춘추』가 적은 것은, 만약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다면, [공자가] 노(魯)나라 역사에 대한 기존의 기록에 의거하여 필삭(筆削)하여 완성한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춘추』를 보고서 반드시 말하기를 어떤 글자가 어떤 인물을 나무라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다면 이것은 공자가 사적인 견해에 오로지 의탁하여 망령되이 포폄한 것이 된다. 공자는 단지 직서에 의거하였을 뿐이고 선악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¹¹

[공자의 서술은] 오늘날의 역사서가 그 일들을 직서하는 것과 같을 뿐이다.¹²

여기서 주희는 사건의 시비와 인물의 선악은 역사가에 의해서, 심지어는 공자와 같은 성인에 의해서조차, 판단될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희에 따르면, 공자를 비롯한 역사가들의 의무는 목격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기록된 사실이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드러내 보이기를, 그리하여 사람들이 권장되는 바와 두려워할 바를 볼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로써 주희는 ‘직필’의 개념으로부터 ‘서술 대상에 대한 도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거했다. 또한 ‘권력자의 도덕적 잘못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하는 대상을 ‘권력자의 도덕적 잘못’에서 ‘사건과 인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로 바꾸었다. 역사가가 상황에 대한 어떠한 판단과 평가의 권한도 가지지 않는 이상, 그들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도덕적 평가의 결과가 아닌 오직 해당 인물 혹은 사건에

11 『朱子語類』「春秋」「綱領」：春秋所書，如某人爲某事，本據魯史舊文筆削而成。今人看春秋，必要謂某字譏某人。如此，則是孔子專任私意，妄爲褒貶。孔子但據直書而善惡自著。

12 『朱子語類』「孟子五」「滕文公下」「公都子問好辯章」：不過如今之史書直書其事。

대한 객관적인 정보뿐이다.

정리하면, 공자가 동호의 사례를 통해 천명했던 '직필'의 규범은 두 가지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1) 권력자의 도덕적 잘못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하며, (2) 이를 위해 서술 대상에 대한 도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자의 춘추필법이 (1)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하나의 딜레마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동중서와 유협은 공자가 『춘추』를 편찬할 때만큼은 '직필'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인정하고, 도덕적 가르침의 수립이라는 새로운 역사 서술의 원칙을 제시하거나 공자에게 메타 도덕적인 판단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자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반면, 주희는 공자의 역사 서술 방식을 '직필'의 한 사례로 해석했으며, 그 과정에서 '직필'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켰다. 그는 서술 대상에 대한 역사가의 도덕적 판단 및 평가의 권한을 부정했으며, 사건과 인물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으로 '직필'을 재정의했다.

III. 조선 『실록』에 드러난 '직필'의 역사

조선인들에게도 '직필'은 역사를 서술하고 편찬하는 데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규범적 원칙이었다. 특히 관찬서인 『실록』을 편찬하거나 거기에 수록될 사초를 서술하는 데에 있어서 '직필'은 사관이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규범이자 도달해야 하는 이상이었다. 조선인들의 '직필'에 대한 이해는 중국인들의 그것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그 자신만의 독특한 변화의 궤적을 그려 왔다. 중국 내에서 유통되었던 '직필'의 의미에 대한 사유들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것들을 수입한 가지각색의 경로에 의해 굴절되고 조선 내의 일련의 정치적 상황들에 의해 재조직되어 고유한 논쟁의 역사를 빚었다.

1. 조선 내에 통용되었던 '직필'의 두 가지 의미

1) '직필', 올바른 도덕적 판단 및 평가의 기록

공자에 의해 천명되고 고대 이후 중국에서 통용되었던 '직필'의 두 가지 아이

디어는 조선인들에 의해서도 공히 수용되었다. 일례로, 고대 중국인들에게 ‘직필’에 대한 인식의 윤곽을 제공했던 동호의 이야기는 조선 내에서도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에 근거하여 직서하고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춘추』의 뜻에 의탁했다. (...) 동호(董狐)의 필법이 자신을 죽이는 매개가 되었으니, 진실로 애통할 만하다.¹³ (밑줄은 인용자)

신들도 이 말이 한 번 나오면 성한(星漢)의 무리들이 역적으로 몰아매를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신이 되는지 역적이 되는지는 전하께서 반드시 통찰할 것이고, 후세에 동호의 붓을 잡은 자도 또한 반드시 판단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신들이 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¹⁴ (밑줄은 인용자)

상기한 인용문들에서, ‘직필’이란 사건 혹은 인물에 대해 독립적이고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그것을 숨김없이 기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실록』의 발화들을 살펴보면, ‘직필’의 의미에 대한 조선인들의 이와 같은 인식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상위 권력자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숨기지 않고 서술한다는 아이디어가 ‘직필’ 혹은 ‘직서’와 결부되어 논해지는 사례들을 『실록』에서 종종 찾을 수 있다. ‘직필’한다는 것은 ‘당대의 일을 숨기지 않는 것’이라는 아이디어는 특히 사초 혹은 기편찬된 『실록』에 대한 군주의 열람을 저지하는 맥락에서 자주 드러난다.

임금이 도승지 이문화(李文和)에게 물었다. “당대의 역사 기록을 군주가 보지 못하

¹³ 據事直書，參以己見，以寓春秋之意。(...)以董狐之筆，爲滅身之媒，誠可痛也。[명종실록 7권, 명종 3년 2월 14일] (향후 『실록』에 대한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의 한국어 번역을 참조하되, 필자의 판단에 따라 수정하였다.)

¹⁴ 臣等固知此言一出，星漢徒黨，驅之以逆臣，而其爲忠爲逆，殿下必洞察之矣，後世之秉董狐之筆者，亦必有權衡者矣，臣等又何畏焉？[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윤4월 27일]

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문화가 대답하였다. “역사는 직서하여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군주와 대신(大臣)이 스스로 [그것을] 보게 된다면, 숨기고 꺼려서 직서하지 않는 바가 있을까 두려워한 까닭입니다.”¹⁵

임금이 말했다. “사관이 만약 올바른을 지킨다면 마땅히 직서하여 숨기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군주가 가져다 보는 것은 진실로 잘못이다.”¹⁶

두 인용문에서 “직서하여 숨기지 않는다(直書不諱)”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용문은 『태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때 태조는 결국 도승지의 발언을 무시하고 사초를 열람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성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성종 스스로가 ‘직서’하여 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발화할 만큼, 해당 원칙이 임금과 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수긍되는 규범으로 자리매김했다. 오항녕(2018b: 36-49)에 따르면 태조 때부터 예종 때까지 군주의 『실록』 및 사초 열람 금지의 원칙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며 제도로 정착되어 갔다. 아마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성종은 태조와 달리 군주가 당대사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쉽게 수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비록 서술 대상이 권력자의 잘못과 관련된 것일지라도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아이디어가 적어도 성종 대에 이르러서는 군주와 신하들의 인식 속에 공히 자리 잡고 있었다.

둘째, 『실록』에서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사관의 도덕적 판단과 평가가 ‘직필’의 대상임을 명시하는 표현들을 빈번하게 찾을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직필’의 대상은 군주나 재상의 언행과 더불어 인물의 선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사의 성패에 대한 판단 등 사관의 주관적인 판단 혹은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

대저 사관의 직임은 직필인데, 위로는 군주의 거동을 기록하고, 아래로는 재상의 언

¹⁵ 上問都承旨李文和曰, “當時史記, 君王未得見, 何也?” 文和對曰, “史, 直書不諱. 若君王大臣自見, 則恐有諱忌不直書故也.”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5월 1일]

¹⁶ 上曰, “史官若守正, 則當直書不諱. 然人主取見, 誠非也.” [성종실록 77권, 성종 8년 윤2월 5일]

행을 기록하며, 또 그가 죽으면 선(善)과 악(惡)을 갖추어 기록하여 후대에 시비(是非)를 전한다.¹⁷

사관의 직책은 군주의 언동(言動)과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직서하여 숨기지 않아 후세에 알리는 것으로, 그리하여 (후대가) “보고 살필 것에 대비하고 권계(勸戒)를 드리우는” 것입니다.¹⁸

이는 본고의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상기할 때 그 함의를 부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록』을 참고하는 현대의 대다수 연구자들은 ‘직필’, ‘직서’의 의미를 “사실대로 쓰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이때 ‘사실’이란 “전통 역사편찬에서는 주관과 객관, 해석과 사실의 문제를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 사실은 사실대로, 해석은 사론으로” 해결하였다는 오항녕(2003: 168)의 주장을 고려하면 평가나 해석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차용걸(1979: 188) 또한 사론이나 인물평을 “사실의 완전한 전달과 보존”이라는 ‘직필’의 이상에 배치되는 결과물로 파악한 바 있다. ‘직필’이 무언가를 사실대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직필’의 대상은 서술자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한정되기에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는 서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대인들은 서술자의 판단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군주의 거동”이나 “재상의 언행”과 서술자의 판단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그것들의 도덕성, 인물의 “선악”을 동등하게 ‘직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기한 현대 연구자들의 이해와 달리, ‘직필’의 대상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사관의 도덕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직필’의 원칙은 사건의 기록뿐만 아니라 사론(史論)이나 인물평을 쓸 때도 적용되는 규범이었다.¹⁹ 또한 일부 연구자

17 夫史官職任直筆，上以記君之舉，下以書宰相之言行，又於其卒，備記善惡，以傳是非於後代。[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6일]

18 史官之職，人主言動，時政得失，直書不諱，以詔後世，所以‘備觀省而垂勸戒’也。[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7일]

19 오항녕(2018a: 310-320)은 기사와 구분되는 사론이 등장한 현상과 성종 대에 특히 사론의 개수가 증가한 현상에 대해서 사학사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오항녕은 “평가와 사실의 엄정한 분리 노력”(2018a: 314)이 기사와 사론의 분화의 기저에서 작동했음을 지적했는데, 필자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당대인들이 ‘사실’로 의미했던 바가 현대인들의 ‘사실’에 대한 이해와 다르다는 점을

들은 인물에 대한 포폄과 사건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실록』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직필’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는데, ‘직필’의 대상에 사관의 도덕적 판단과 평가가 포함됨을 상기하면, 그러한 사실은 ‘직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필’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직필’의 의미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은 중국에서 고대 때부터 통용되어 오던 인식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그들에게도 ‘직필’이란 사관이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조선의 논자들은 이러한 ‘직필’을 상상하면서 ‘올바른 도덕적 판단 및 평가’에 수반되는 사관의 행위자성(agency)에 상당히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관은 마땅히 직필을 해야 한다. 선하다고 기록하는 것도 그의 마음이요, 선하지 않다고 기록하는 것도 그의 마음이다.²⁰

사관은 마땅히 지극히 공정하고 사정이 없이 사필(史筆)을 바르게 써야 하는데, 한림 이수영(李守英)은 승지를 비호하고 정원(政院)에서 아뢴 말을 은회해서 말하여 그 마음이 사특하므로 사관에 합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체차(遞差)하고 추고(推考)하도록 하소서.²¹

첫 번째 인용문은 ‘직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관의 ‘마음을 따라서’ 쓰는 방식을 거론한다. 군주의 언행에 대한 선악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에 사관이 “자신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직필’을 구성하는 의미 요소 중 사관의 독립적인 판단 및 평가 능력을 부각시킨다. 또한 두 번째 인용문은 사관의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實)’의 의미에 대한 필자의 연구 참고(송지혜, 2019: 20-26). 관련 내용은 본고의 후반부에서도 다루어진다. 사론과 기사는 모두 ‘직필’의 규범에 부응해야 했지만, 기사는 ‘실’의 규범에도 부응해야 했고, 그랬기에 사론이라는 영역을 별도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필자는 추정한다.

²⁰ 史臣當以直筆也。書之善者，固其心也，書之不善者，亦其心也。[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8일]

²¹ 史官，當至公無私，直書史筆。翰林李守英，庇護承旨，諱言政院所啓之辭，其心邪惡，不合史官。請遞差推考。[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9일]

마음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함으로써 올바른 도덕적 판단 및 평가를 내리기 위한 사관의 자격 조건을 ‘직필’의 의미망에 추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관은 “지극히 공정하고 사정이 없”어야 하며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당대의 조선인들은 ‘직필’을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를 숨김없이 기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러한 도덕적 판단과 평가를 내리는 사관의 행위자성에 주목했다. 이는 1장에서 살펴본 중국 지식인들의 ‘직필’에 대한 담론 속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던 요소로, ‘직필’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고유한 이해방식이라고 특기할 만하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조선의 정치행위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직필’의 의미를 두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징이라고 추정된다.

2) ‘직필’, 보고 들은 사실에 근거한 기록

한편, 흥미롭게도 『실록』에는 현대의 연구자들이 추정하는 것과 같이 사관이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직필’이라는 이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다. 일어난 일에 근거해서 기록하는 것이 ‘직필’이라는 사유는 종종 일어난 일에 대한 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배제해야 한다는 사유와 함께 제시되었다.

사관이 직필을 잡아 보고 들은 바를 따라서 그것을 쓰는데, 내가 어떻게 참견하겠는가?²²

사관이 일을 씬에 있어서 기리려고 지나치게 그 착함을 일컫고, 험뜯으려고 지나치게 그 악함을 일컫으니, 이것이 어찌 직필이겠느냐? 말은 비록 비리(鄙理)하다 하더라도 일에 의거하여 직필하는 것이 가하다.²³

첫 번째 인용문에는 사관이 “보고 들은 바를 따라서” 쓰는 것이 ‘직필’이라는

²² 史氏秉直筆, 隨見聞書之, 予何與知焉?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5일]

²³ 史官之於記事, 將欲譽之, 過稱其善, 將欲毀之, 過稱其惡, 是豈直筆也! 詞雖鄙理, 據事直書可也.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7월 23일]

이해가 드러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보고 들은) “일에 의거하여” 쓰는 ‘직필’은 선함과 악함을 기록하는 행위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하는 것이 ‘직필’이라는 이해는 ‘직필’과 춘추필법과의 대조를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세종의 아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이 말했다. “만약 공자의 『춘추』라면, (...) 취하고 삭제하는 것, 주고 뺀 것이 성인의 마음으로부터 결정되었다. (...) 『주자강목』의 경우에는 비록 춘추의 필법에 근거했다 하나, 그 주석에서는 참람하게 속인 나라가 명칭을 도절한 것도 또한 모두 그 사실에 의거하여 그대로 기록하였으니, (...) 오늘날 사필을 잡은 자가 이미 성인이 취하고 삭제한 뜻을 엿볼 수 없다면, 다만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직서하면 포폄할 것이 스스로 드러나서 후세에 신빙성 있는 말을 전하기에 충분할 것이니, 반드시 전대(前代)의 임금을 위하여 그 과실을 가리고자 나중에 경솔히 고쳐서 그 사실(實)을 인멸케 할 필요는 없다.”(밑줄은 인용자)²⁴

여기서 세종은 ‘직필’과 춘추필법을 구분하고, 춘추필법은 성인이 아닌 일반 사관이 감히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춘추필법은 ‘직필’이 아니며 오직 성인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일반 역사가는 감히 따라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춘추필법과 ‘직필’에 대한 동중서와 유협의 논의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때 세종이 춘추필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중국의 지식인들이 춘추필법을 이해했던 방식과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동중서와 유협이 이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며 주목했던 춘추필법의 특징은 그것이 일부 권력자들의 행위를 은닉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직필’의 의미 구성요소 중 권력자의 악행을 숨기지 않아야 한다는 요소와 대립하기에 그들은 춘추필법을 ‘직필’과 구분하고 전자를 공자의 성인(聖人)됨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를 취했다. 이와 다르게, 세종이 주목하는 춘추필법의 특징은 “취하고 삭제하는”, “주고 뺀” 서술이라는 점인데 이

²⁴ 上曰: “若孔子之春秋, (...) 筆削與奪, 裁自聖心. (...) 若朱子之綱目, 雖日本春秋書法, 而其分註則僞僞之邦盜竊名號者, 亦皆因其實而錄之, (...) 今之秉筆者, 既不能窺聖人筆削之旨, 則但當據事直書, 褒貶自見, 足以傳信於後, 不必爲前代之君欲掩其失, 輕有追改, 以沒其實也.”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29일]

는 “사실에 의거하여 그대로 기록”하는 것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 세종은 춘추필법이 일부 권력자의 악행을 ‘숨겼다’는 측면에 주목하기보다 그것이 사실을 ‘취사 선택’하여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러한 ‘취사 선택’은 성인의 의중에 따른 것이며, 일반 사관들은 성인의 의중을 이해하거나 따라 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세종에 따르면, 이러한 춘추필법과 구분되는 ‘직필’이란 사실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직필’에 대한 세종의 이해는 주희가 ‘직필’을 규정했던 방식을 상기시킨다. “사실에 의거하여 직서하면 포폄할 것이 스스로 드러나서 후세에 신빙성 있는 말을 전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세종의 발언은 일어난 사실을 사관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 그것의 선악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는 주희의 생각과 일치한다. 흥미로운 것은 주희는 공자가 권력자의 어떠한 비행도 은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춘추필법이 이러한 ‘직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세종은 춘추필법과 ‘직필’을 대조시켜 이해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인들이 오랜 담론 속에서 풀고자 했던 춘추필법의 딜레마가 세종을 위시한 조선의 행위자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조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직필’이 사관의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는지의 여부였으며, 세종은 ‘직필’의 의미에서 사관의 도덕적 판단 권한을 소거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춘추필법의 특징에 주목하고 그것과 ‘직필’을 구분하는 논리를 전용했다. 춘추필법과 ‘직필’을 구분하고 춘추필법은 공자의 특수한 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하는 논리가 발화자들이 임하는 논쟁의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종이 임하고 있던 논쟁의 맥락은 바로 다음 절에서 후술하겠다.

2. ‘직필’의 두 의미의 상호 경합

상기한 것처럼, 조선 내에서는 ‘직필’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통용되었다. 한 가지는 고대 중국에서처럼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숨김 없이 기록하는 것이 ‘직필’이라는 이해였고, 다른 하나는 사관이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직필’이라는 이해였다. ‘직필’에 대한 두 가지 이

해는 각각 사관의 역할과 권한을 상이한 정도로 확보해 주었기에, 조선의 정치 행위자들은 '직필'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하고자 분투하였다. 사관들은 '직필'과 사관의 도덕적 판단 및 평가 권한을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으며, 군주들은 '직필'과 사관의 도덕적 권한을 분리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투를 배경으로 하여, 조선의 담론 내에서 '직필'은 사관의 행위자성을 강화하거나 탈각시키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양분화되었다.

사관들은 종종 '직필'의 첫 번째 의미에 호소하며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자신들의 도덕적 판단을 군주의 의사에 맞서 관철시키고자 노력했다. 실제로, 사관을 비롯한 신하들이 '직필'을 고대의 중국에서 통용되던 의미로 정의하고자, 그리고 그것의 권위로써 군주의 권위를 견제하고자 시도했던 흔적들은 『실록』에서 빈번하게 확인된다. '직필'은 '사필(史筆)'이라는 말로도 지칭되었는데, '사필'은 하늘(天)과 같이 군주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군주가 두려워할 만한 것은 하늘이고 사필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높은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천리(天理)일 뿐입니다. 사관은 군주의 선악을 기록하여 만세에 전하니, 두려워할 만하지 않습니까?²⁵

'사필'을 두려워해야 하는 까닭은 군주의 선악을 기록하여 그것을 만세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만세'로 지칭되는 영구한 시간 속의 후대가 군주의 현재 언행의 선악을 보게 되니, 군주는 마땅히 그 시선을 인식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의 신하들은 이와 같은 '사필'의 권위에 근거하여 군주의 언행을 제약하고자 했다.

한때의 공론은 대간(臺諫)들의 책임이며 만세(萬世)의 실록(實錄)은 사관의 직임입니다. 간관(諫官)들의 직언(直言)은 오히려 거절할 수 있어도 사책(史策)의 공론은 어떻

²⁵ 人君所可畏者, 天也, 史筆也. 天非蒼蒼高高之謂也, 理而已. 史官記人君之善惡, 以貽萬世, 可不畏乎?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7일]

게 추회(追悔)할 수 있겠습니까?²⁶

이는 궁내에 불교 관련 시설을 설치하려는 명종의 행동을 제약하고자 예문관에서 올린 상소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실록』에 실리는 평가가 당대의 공론과 함께 군주의 권위에 대항할 수 있는 상징적 권위를 가졌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당대인들에게 『실록』의 평가(사책의 공론)는 간관들이 직언하는 “한때의 공론”보다 한층 높은 위상을 지녔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사건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 및 평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정의된 ‘직필’은 “한때의 공론”보다도 높은 위상을 지니고 군주의 권위에 대항할 수 있는 상징적 권위를 가졌으며, 조선의 신하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에 군주들은 신하들의 이와 같은 도전에 응대하기 위해 ‘직필’을 재정의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들은 사관이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직필’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직필’의 의미로부터 사관의 도덕적 판단 및 평가 권한, 즉 그들의 특정한 행위자성을 제거하고자 했다.

도승지 김승경(金升卿)이 아뢰었다. “유생이 불교를 물리치자고 상소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4백여 인을 가두었으니, 사필에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했다. “사관은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직서할 뿐이다. 쓰고 안 쓰는 것을 내가 어찌 걱정하겠는가?”²⁷

“국사(國史)가 그 일을 쓰기를, ‘태학생(太學生)이 불교를 물리치자는 내용으로 상소하였는데, 체포하여 가두고 국문하였다.’ 하면, 후세의 나무람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전교하기를, (...) “또 비록 사책에 쓰더라도 사실에 의거하여 직서하면 후세에 자연히 공론이 있을 것이다.”²⁸

²⁶ 一時公論, 臺諫之責, 萬世實錄, 史臣之任. 諫官之直言, 猶得以拒之, 史策之公論, 安可追悔? [명종실록 11권, 명종 6년 1월 14일]

²⁷ 都承旨金升卿啓曰, “儒生上疏闢佛, 而一朝囚四百餘人, 其於史筆何?” 上曰, “史官當據事直書耳. 其於書不書, 予何恤焉?”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30일]

²⁸ 國史書之曰, ‘太學生以闢佛上疏, 而逮獄鞠之.’ 則其於後世之譏何? (...) 傳曰, (...) 且雖書諸史策, 據事直書, 而後世自有公論.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9일]

첫 번째 인용문에서 성종은 ‘직필’을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군주의 권위에 맞먹는 ‘사필’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신하들이 ‘사필’의 원칙에 호소하며 유생들의 처벌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군주를 견제하자, 성종은 ‘직필’을 사실만 서술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사관들의 도덕적 판단 능력 자체를 부정한다. 성종에 따르면, 사관들의 ‘사필’은 해당 사건에 대해 도덕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그저 서술하는 것일 뿐이다.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빼앗긴 사관들의 ‘사필’은 군주를 견제할 수 있는 상징적인 힘을 가지지 못한다.

두 번째 인용문은 이러한 성종의 반응에 대해 사관들이 재반박하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직필’이 사실만을 서술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정의되더라도, 그러한 사실 서술 행위는 “후세의 나무람”에 힘입어 군주를 견제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사건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권한이 자신들에게는 없을지언정,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 후대의 사람들이 사건의 도덕적 잘못을 알게 될 것이라는 위협이다. 후대의 시선이라는 권위에 호소하여, 성종에 의해 재정의된 ‘직필’의 도덕적 권위를 다시금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종은 후대의 시선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사관들의 시도를 좌절시킨다. 후대의 사람들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내버려 두면 그만일 뿐, “자연히 공론”이 있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성종은 후대의 시선을 위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전에 김일손(金駟孫)이 공초에서 말하기를, ‘사관은 일을 들으면 반드시 쓴다. 그러므로 그것을 썼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사관은 일을 마주하면 어떤 경우에는 쓰고 어떤 경우에는 쓰지 않아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쓰니 이것이 어찌 군주를 사랑하는 것이겠는가?²⁹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관들의 권한을 빼앗으려는 군주의 시도는 연산군의 사례에서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연산군

²⁹ 前日金駟孫供云, ‘史官聞事必書, 故書之.’ 今之史官遇事, 或書或不書, 隨其意而書之, 是豈愛君乎? [연산군일기 37권, 연산 6년 4월 19일]

은 들은 일을 기록하는 행위와 사관의 판단(“자신의 뜻”)을 따라 기록하는 행위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후자를 지양하고 전자를 지향할 것을 사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연산군은 사관이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서술하는 행위는 보고 들은 사태를 선별적으로 서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해하며, 이것은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하는 사관의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처럼 연산군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서술하는 행위와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행위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사관들의 도덕적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했다.³⁰

이처럼 사관을 비롯한 조선의 신하들은 ‘직필’을 사건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기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것의 상징적 권위를 이용하여 군주의 언행을 제약하고자 했다. 그들에게 ‘직필’은 자신들의 도덕적 판단 및 평가 권한을 확보해 주고 그것의 도덕적 권위를 확보해 주는 정치적 자원이었다. 반면, 군주들은 신하들의 그러한 정치적 자원을 빼앗거나 축소하고자 ‘직필’의 의미를 재규정하고자 했다. 세종과 성종을 위시한 조선 초·중기의 여러 군주들은 ‘직필’을 사실에 근거한 기술 혹은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직필’의 의미에서 사관들의 독자적인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의 권한을 소거했다. 때론 더 나아가 ‘직필’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후대인들의 시선 또한 무력화시킴으로써, ‘직필’의 원칙에 호소하는 것이 허락하는 정치적 영향력의 크기를 줄였다. 요컨대, ‘직필’의 원칙은 서술자에게 일련의 상징적 권위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자원으로 기능하였고, 조선의 정치행위자들은 해당 자원을 활용하거나 무력화시키고자 ‘직필’의 의미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³⁰ 이어지는 발화에서 연산군은 “만약 『춘추』의 직필이라면 그만이겠지만, 기타 사관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如『春秋』直筆則已矣, 其他史官則不當如是也.)”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자와 기타 사관을 구별하는 논리를 전유한다. 이때 연산군은 공자의 서술방식을 ‘직필’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사관의 직무와 대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성종처럼 ‘직필’의 의미 변경을 시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연산군이 사관의 직무를 재정의함으로써 사관들의 도덕적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했다는 점은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3. '직필'의 두 의미의 상호 결합

그러나 사실에 의거하여(因其實) 기록하는 것이 '직필'이라는 사유가 올바른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를 기록하는 것이 '직필'이라는 사유와 언제나 대립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러한 대립 구도는 종종 전자를 주장함으로써 사관의 도덕적 평가 권한을 축소하려 했던 군주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런데 군주들의 이러한 시도는 연산군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 『실록』에서 자취를 감춘다. 조선 중기를 지나게 되면,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것이 '직필'이라는 사유는 사관의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를 배제하기보다 그것을 보충하거나 적정 수준에서 규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조선 중기 이후로는 사건이나 인물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관의 권한이 군주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공고히 받아들여졌음을 방증한다. '직필'에 대한 두 가지 이해는 조선의 전 기간 동안 존속했지만, 그것들이 상호 대립하며 각을 세우는 모습은 사관의 지위와 권한이 공고해짐에 따라 사라져 갔다.

정치적 상황의 제반 조건이 변하더라도 '직필'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의미론적으로 완연하게 대립한다면, 두 이해의 양립은 어려웠을지 모른다.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과 사관의 올바른 도덕적 평가 및 판단을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은 현대의 상식에 입각하면 의미상 양립 불가능하다. 현대의 상식에 따르면, 도덕적 평가 및 판단은 사관의 주관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기에 '사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사실(實)'의 의미 외연이 현대보다 훨씬 폭넓고 다양했기에, 사실만을 기록한다는 원칙과 사관의 도덕적 평가나 판단을 기록한다는 원칙은 정치적 상황이 허락하는 한 상호 공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대에 "사실(實)"은 어떤 것들을 지칭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자. 『실록』의 발화들을 살펴보면, "實"은 적어도 다음의 3가지 종류의 것들을 지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감각할 수 있는 현상

그러나 상인들이 미곡을 갖추지 않고 권세에 의탁하여 포화(布貨)를 거짓으로 납부

하고, 수령(守令) 또한 사사로움을 좇아 청탁을 들어주어 근거 없이 미곡의 수목(數目)을 기록하니, 명(名)과 실(實)이 어긋납니다.³¹

[2] 누군가의 발화

대간은 반드시 달리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을 말한 것이리니, 청컨대 그 근거(實)를 물으시어 신으로 하여금 밝히게 하여 주소서.³²

만약 정확한 말의 근거가 있다면 상고한 후에 비록 원수의 집안이 백 명이 되더라도 어찌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모두 근거(實)가 없는 말입니다.³³

[3] 누군가의 의도

이는 그들의 행태가 비록 잘못에 책임을 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실정(實)은 전하의 노여움을 격동시켜 대관을 죄주려는 것이었습니다.³⁴

그리고 대관이 비록 대신이라고 넓게 말했으나 그 실정(實)은 반드시 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³⁵

명사 “實”로 지칭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눈과 귀 등의 감각으로 감각할 수 있는 현상이다. [1]의 사례에서 “實”은 쌓여 있는 미곡을 가리켰다. 다른 하나는 누군가의 발화다. [2]의 첫 번째 문장에서 대간의 말의 “實”을 묻는다는 것은 해당 대간이 ‘들었던 바(所聞)’를 묻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상고된 말에 “實”이 없다는 것은 정확한 ‘말의 근거(言根)’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의 근거’라는 표현은 『실록』에서 주로 여러 다리를 건너온 말의 출처를 지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문장에서 “實”은 모두 대간이나 상고한 자가

31 然商賈等不備米穀，依附權勢，冒納布貨，守令亦徇私從請，虛錄米穀數目，名實乖舛.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5월 20일]

32 臺諫必有別樣所聞而言之矣，請問其實，使臣曝白.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21일]

33 若有的確言根，則上告之後，雖仇家百人，安能威脅乎？此皆無實之言. [광해군일기(정초본) 131권, 광해 10년 8월 18일]

34 其迹雖若引嫌，而其實則欲以激殿下威怒，而罪臺官也. [성종실록 41권, 성종 5년 4월 27일]

35 且臺官雖泛稱大臣，而其實則必指臣而言. [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2월 17일]

들었던 누군가의 발화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누군가의 발화를 지칭하는 이러한 “實”의 용례는 현대의 상식 내에서는 누군가의 말을 곧 ‘사실’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 하나는 누군가의 의도다. [3]의 첫 번째 문장에서 “實”은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한 자들의 실제 의도를 가리키고 있다. 실제 의도는 드러난 행동과 달리 왕을 자극하여 자신들을 비판한 대관에게 죄를 씌우려는 목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實”은 (비판의 맥락에서) 대신들을 범박하게 언급했던 어떤 대관의 추정되는 실제 의도를 지칭하고 있다. 대관의 말은 대신들 일반이 아닌 화자 자신을 특정하려는 발화였다는 지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용례는 “實”이 실제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그리하여 현대의 상식 내에서는 ‘사실’이 아닌 추론이나 해석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상의 작업을 통해 당대의 “사실(實)”은 적어도 감각되는 현상, 누군가의 발화, 그리고 누군가의 의도를 지칭할 수 있는 단어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직필’을 사실에 근거한 기록으로 이해하더라도 기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는 감각되는 현상, 누군가의 발화, 누군가의 의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당대의 ‘사실’의 의미 외연이 넓었음을 고려하면,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로서의 ‘직필’이 요구하는 ‘사실’에 누군가의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가 포함되는 것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사건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기록해야 한다는 ‘직필’의 의미는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직필’과 대립하지 않고 그것과 공존할 수 있었다.

‘직필’의 두 가지 의미의 공존은 사관들에게 두 종류의 규범에 동시에 부응할 것을 요구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제 사관이 ‘직필’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를 기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판단과 평가의 근거로써 당대인들이 수궁할 수 있는 형태의 ‘사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사관의 ‘직필’은 개별 사관의 의견에 좌우되기보다 서술 대상에 대한 당대인들의 대체적인 합의 혹은 공론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예컨대, 인물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당대인들이 수궁할 수 있는 풍문에 기초해야 했고, 사건에 대한 논평은 당대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론에 기초해야 했다.

이처럼 ‘직필’이 당대인들이 인정하는 공론에 기초하여 사건 혹은 인물에 대

한 도덕적 판단과 평가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이해된 결과, ‘직필’은 당대의 도덕적 평가가 갈리는 사안의 시비를 결정하는 정치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과 인물에 대해 사관이 ‘직필’하여 『실록』에 기록하는 일은 곧 해당 사태의 옳고 그름, 시비와 선악을 당대인들의 적극적 혹은 소극적 인정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직필’의 정치적 기능은 조선의 행위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초함에는 의도가 있다. 사초에 (실린) 한때의 취사(取捨)가 어떻게 선을 자극하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경우에는 보고 들은 것이 각기 다름에 근거하여 반드시 옳음을 다투고 그름을 다투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 그런데 또 세초하지 않는다면 분분하고 혼란스러운 말들을 어떻게 진정시키겠는가? 세초함이 마땅하다.³⁶

이상의 내용은 사초에는 사관들의 강직한 의견이 많으니 『실록』 편찬 후에도 사초들을 세초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영조가 대답한 것이다. 세초란, 사관들이 제출한 사초들을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한 이후에, 제출되었던 사초들을 물에 씻어 사초 상의 기록을 삭제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영조는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 사태에 대한 여러 다른 의견들(분운한 말)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실록』 편찬 후에 그 원자료가 되는 사초들을 남겨 놓는다는 것은, 사태의 시시비비를 정하는 ‘직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두 의미의 결합으로서의 ‘직필’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의 시비와 선악을 정하는 기능을 가졌다.³⁷

³⁶ 洗草有意. 史草中一時取捨, 安能盡善? 或因見聞之各異, 必有爭是爭非之弊. (...) 而又不洗草, 則紛拏之言, 何以鎮定乎? 洗草宜矣. [영조실록 14권, 영조 3년 11월 25일]

³⁷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의 시비와 선악을 정하는 ‘직필’의 기능은 국시(國是)의 기능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국시는 조선시대에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사태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제였다. 그것은 “나라의 사람들이[國] 옳다[是]고 여기는 것”(김경래, 2012: 129)으로, 국시의 중요한 속성은 그것이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opinion)의 차원”이 아니라 “최종 결정(policy)”의 차원을 가졌다는 점이다(김경래 2012: 132). 상기한 ‘직필’의 기능과 국시의 기능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송지혜(2019: 30-33) 참고.

IV. 결론

조선 시대에는 ‘직필’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통용되었다. 하나는 고대 중국에서 통용되던 의미와 같은 것으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사관의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평가를 숨김없이 기록하는 것이 ‘직필’이라는 이해였다. 다른 하나는 주희가 주장했던 의미와 유사한 것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혹은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것이 ‘직필’이라는 이해였다. 두 가지 이해는 조선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상호 경합하며 다양한 정치행위자들의 이해에 봉사하기도 했고, 조선 중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상호 결합하여 ‘직필’의 새로운 정치적 기능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본고는 『실록』 쓰기의 주요한 규범적 원칙으로서의 ‘직필’의 의미에 대해 역사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실록』에 복잡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함을 역설하고자 했다. ‘직필’에 얽힌 다양한 역사적 맥락과 논쟁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실록』은 단순히 ‘사실대로 쓰는 것’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기록이 아니다. 『실록』은 때로 조선의 정치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유하고자 했던 상징적 자원이었고, 때로 당대의 시비를 정하는 정치적 기제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실록』의 독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띌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하겠다.

투고일: 2022년 2월 15일 | 심사일: 2022년 3월 14일 |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30일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董仲舒, 『春秋繁露』
劉勰, 『文心雕龍』
左丘明, 『左傳』
朱熹, 『朱子語類』

김경래. 2012. “조선 공론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李珥의 公論 개념을 중심으로

- 로.” 『사학연구』 105, 107-148.
- 김경수. 2002. “조선전기 실록 편찬에 대한 사학사적 고찰.” 『조선시대사학보』 20, 5-53.
- 노명호. 2019.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 파주: 지식산업사.
- 송지혜. 2019. “『조선왕조실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실록』의 규범적 이상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항녕. 2003. “그런데 왜 실록을 편찬하였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14, 160-171.
- _____. 2016. “역사 대중화와 역사학: 역사의 향유와 모독 사이.” 『역사와 현실』 100, 91-128.
- _____. 2018a. 『실록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 _____. 2018b. 『후대가 판단케 하라』. 역사비평사.
- 차용걸. 1979. “조선왕조실록의 편찬태도와 사관의 역사의식(조선전기).” 『한국사론』 6, 150-190.

Abstract

The Idea of Upright Writing (zhíbǐ, 直筆) in Joseon Historiography

Jihye S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Upright Writing (zhíbǐ 直筆 or zhíshū 直書)” has been referred to as a normative principle for writing history in East Asia. Above all, “upright writing” has guided the compilation of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祖實錄).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upright writing” as perceived by the Joseon people. In Joseon, there were two different understandings of “upright writing.” One was to write down the most right judgment of the reality without any concealment, which resembled the classical Chinese understanding. The other was to write down the facts not allowing any jurisdiction of a historian, which resembled the understanding of Zhuxi (朱熹). These two understandings have competed and collaborated in the political context of Joseon. In the process, they served the political interests of diverse agents and provided a political mechanism for deciding right and wrong. Taking such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principle of “upright writing” will allow us to fully savor some critical layers of meaning of the *Veritable Records*, which has not yet been investigated due to an anachronistic understanding of “upright writing.”

Keywords | upright writing, the Veritable Records, historiography

